구제역, AI 발생국 여행 한 축산인도 신고 의무화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가에 다녀온 축산관계자와 축산 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에 대한 소독 조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자및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구체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 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관계자는 1만6813명에 이르며 구제역의 경우 전 세계 68개국 AI는 17개국에서 발생했다.(축산수첩3·page 58 표 참고)

또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등 농식품 안 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책임지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골 자로 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를 지난 7월 25일 개최하였다. 다음은 이날 논의 된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이다.

⊙ 국경검역 강화

'11.7.25일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정보를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

0

축산수첩

구제역 AI 발생국 여행 한 축산인도 신고 의무화

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 구제역 68개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7개국
- ※ 축산관계자 입국현황: ('10.5~12월) 26,490명, ('11.1~6월) 16,813명

●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소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12년 까지 27억워 투입) 검사 인력도 증원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일본산 수입축산물 28건 전건 적합, 국내산 축산물(원유) 157건 전건 적합(11.7.21현재)
- ※ 수산물 1,937건(일본산 1,731, 태평양산 73, 국내산 133) 전건 적합('11,7,20현재)

⊙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유통성수기와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을 개발하고 단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처벌강화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며, 2012년 부터는 미꾸라지와 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 농산물 2,822개소(거짓표시 1,855. 미표시 967). 수산물 642개소(거짓표시 539. 미표시 103) 적발(*11년 상반기)

● 식중독 예방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과 남해한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 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간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